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828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과의 연동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6
다. 관계 기관 의견	11
2.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12
가. 개정안의 내용	12
나.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방식	17
다. 검토의견	19
라. 관계 기관 의견	22
3.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23
가. 개정안의 내용	23
나. 검토의견	28
다. 관계 기관 의견	31
4. 기초연금 비용 전액을 국가 부담으로 전환	32
가. 개정안의 내용	32

나. 검토의견	33
다. 관계 기관 의견	35

I. 개요

1.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82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0. 22.

(3) 회 부 일 : 2024. 10. 23.

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우리나라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운영 중임.

그러나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해 상·하위를 구분하는 현재의 70% 산정기준은 의미도 부족하고, 기준의 객관성과 명확성도 떨어져 끊임없이 불만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연금 급여의 상한액인 ‘기준연금액’은 대통령선거 때마다 10만원씩 인상되는 선심성 공약을 통해 30만원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경제 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기초연금의 수급권자 범위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같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 2) 기초연금이 최소한의 생계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하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과 같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 3)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던 것을 연계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4항 삭제 등).
- 4)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3항 삭제 및 제5조제8항 신설 등).
- 5)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90이하에서 전액으로 상향함(안 제25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과의 연동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 급여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을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연동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u>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u>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u>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u> ④ <u>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 ----- <u>선정기준액</u> ----- ----- ----- ----- ② <u>선정기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서 해당 연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u> <u><삭 제></u>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 -----

현행	개정안
(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연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하는 해당 연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으로 정한다.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한 기준연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는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 조정, 제2항에 따른 재정 소요 전망과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의 세부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① - -----5년마다----- ----- ----- ----- ----- ----- 평가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재정 소요 전망과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의 세부 절차 등에----- -----.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나. 검토의견

□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되,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여져야 함.¹⁾

- 선정기준액은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4년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1인 가구)와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2인 가구)의 선정기준액은 각각 월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원과 340만 8천원이고,²⁾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소득 및 재산의 범위와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각각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³⁾

□ 한편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2024년 현재 334,810원⁴⁾)을 상한으

-
- 1)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2024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4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으로 한다.
- 3)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2024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4년 기준연금액은 33만4천8백1십원으로 한다.

로 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되는데,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정하여짐.⁵⁾

- 「기초연금법」이 제정된 2014년 당시 기준연금액은 20만원이었고,⁶⁾ 이후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2018년 기준연금액과 2021년 기준연금액을 각각 25만원과 30만원이 되도록 일시에 인상하였는데,⁷⁾

- 5)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조·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 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기준연금액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 가. 소득재분배급여액
 -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6)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7조(기준연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2021년도에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에 앞서 소득하위 20% 이하인 사람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2019년에 먼저 30만원으로 인상하고,⁸⁾ 이어 소득하위 40% 이하인 사람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2020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음.⁹⁾

□ 그런데, 기초연금 급여의 산정기준이자 그 상한액인 기준연금액이 빈곤한 노인의 최저생계 보장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 내지 완화하는 데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 이에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 급여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을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인데, 2024년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으로서 2024년도 1인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13만원)보다 약 10만원 가까이 높은바,

7) 법률 제15536호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8) 법률 제16241호 「기초연금법」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9)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과 같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되는 경우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는 노인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른 2024년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71만 3,102원으로서 2024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34,810원)의 2배 이상인바,

개정안과 같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연동되면 기초연금 급여액 수준이 높아져 우리나라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기초연금 급여는 ‘이전소득’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여부 판단 시 활용되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그 최저보장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기초연금 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경우 생계급여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가 전액 삭감됨으로써 기준연금액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상향하여 기초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 달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생계급여 지급 여부 판단에 활용되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급여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27호)이 김선민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있는바, 동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현행법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을 적용하되, 2인 가구의 선정기준액이 1인 가구의 선정기준액의 2배가 아닌 1.6배가 되도록 하여 부부감액에 따른 2인 가구의 불리함을 선정기준액의 완화로써 시정하고 있는데,¹⁰⁾

개정안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되도록 하여 수급자의 배우자 유무를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가구(부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기초연금 수급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그 급여액을 지급하면서도 부부감액제도는 현행을 유지하고 있어 2인 가구가 1인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여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한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을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과 ‘1인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연동하여 상향되도록 하면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폐지하는 개정안 전체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0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개정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

(단위: 조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16.1	17.6	19.7	22.0	24.9	100.3	2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0) 현행 1인가구 선정기준액(213만원) 대비 2인가구 선정기준액(340만 8천원)의 비율은 1인가구의 기초연금액과 부부감액이 적용된 2인가구의 기초연금액 간 비율인 ‘1:1.6’이 되도록 정하여짐.

- 참고로, 정부는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함으로 인하여 생계급여액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제도와 생계급여제도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노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지급 대상자 변경 및 기준연금액 인상에 소요되는 재정을 고려하여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단가 조정은 연금개혁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고, 재정소요 급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액을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조·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삭 제>
⑤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삭 제>

현행	개정안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기준연금액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삭 제>

현행	개정안
<u>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u> 3. <u>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u> <u>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u> <u>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u> <u>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u> <u>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u> <u>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u>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u>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생략) 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삭 제>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에----- ----- ----- ----- ----- ----- -----

현행	개정안
있다. ③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액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 제> ④ 제2항에----- -----.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나.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방식

-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에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우선 적용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감액을 각각 적용하여 조정된 ‘기초연금 급여액’을 매월 받게 됨.
-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초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는 ‘기준연금액’과 ‘기준연금액의 50% (부가연금액)’를 각각 상한과 하한으로 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조정됨.

< 대상 유형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 >



주: 2024년도 기준연금액과 부가연금액은 각각 334,810원과 167,400원임.

자료: 보건복지부

□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우선 적용된 기초연금액에 대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초연금액을 20%씩 감액하고(부부감액),

선정기준액 전·후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되(소득역전 방지감액),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매월 받는 ‘기초연금 급여액’은 적어도 ‘기준연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조정함.

< 기초연금액에 대한 감액 적용 >



자료: 보건복지부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기준연금액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되기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3종의 감액제도 가운데 ‘국민연금 연세감액’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자신의 기여에 기초한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기초연금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그 혜택이 축소되는 데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기초연금 급여액을 인상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기초연금은 특정 연령(65세)에 도달한 후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선정기준액) 이하이기만 하면 개별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지제도로서 운영 기제가 서로 다른바,

기초연금제도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다른 소득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실 기여의 결과가 기초연금 급여액의 삭감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소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의 경우 기본연금액 산정에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하 “A값”

이라 한다)이 반영되는 재분배기능이 있는데,¹¹⁾

전체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월액[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에 환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하 “B값”이라 한다)]이 A값보다 적은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정에 B값만이 적용될 때보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기초연금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폐지되면 B값이 A값보다 낮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의 재분배기능과 기초연금의 복지기능이 중복되어 혜택이 제공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그런데, 국민연금의 재분배기능과 기초연금의 복지기능 간 중복을 방지하려면 B값이 A값보다 낮은 수급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월 502,210원(2024년 기준)을 초과할 때부터 적용되는바,¹²⁾ 국민연금의 재분배기능과 기초연금의 복지기능

11)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12) 「기초연금법」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

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고,

국민연금의 재분배기능은 그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복지제도로서 그 재원이 서로 다른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다만,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여부는 기초연금(0층)-국민연금(1층)-퇴직연금(2층)-개인연금(3층)으로 구성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재구조화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들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이외에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가의 재정 부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폐지 여부가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라.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에 소요되는 재정을 고려하여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국민연금의 경우 A값(최근 3년간 전체 수급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에 상응하는 급여액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바,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삭 제>

현행	개정안
<u>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u>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 ⑦ (생략)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 ⑦ (생략)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현행	개정안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u> 1. <u>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u>	2. 「<u>군인연금법</u>」 제7조에 따른 <u>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u> 3. 「<u>별정우체국법</u>」 제24조제2항에 따른 <u>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u> 4. 「<u>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u>」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u>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u>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삭 제>

현행	개정안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5세에 도달할 당시 제3조제3항에 대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서 제외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2.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3. 65세에 도달할 당시 이 법과 함께 공포·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4.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 개시 후에 선정기준액(제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	

현행	개정안
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나. 검토의견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은 실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음.¹³⁾

- 다만, 법률 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¹⁴⁾에서는 종전

- 13)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제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14)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기준연금액의 반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2014년 「기초연금법」 제정 당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을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직역연금의 높은 급여 수준, 국민적 정서, 국가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나,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의 실제 소득인정액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보다 높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원천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5세에 도달할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2.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3. 65세에 도달할 당시 이 법과 함께 공포·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4.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 개시 후에 선정기준액(제3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특히, 2015년 직역연금 개혁을 통하여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하향되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은 현재 상태의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을 다른 사람과 차별할 합리적 이유는 크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기초연금법」 제정 당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사유인 직역연금의 높은 급여 수준, 국민적 정서, 국가의 재정부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하게 될 경우 소요되는 재정을 고려하여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고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직역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유사한 중복지원 방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국방부) 수용

- 소득인정액이 70% 이하인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4. 기초연금 비용 전액을 국가 부담으로 전환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에서 전액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u>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u>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한다.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조례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비용의 부담) ① ----- <u>기초연금의</u> ----- ----- ----- <u>전부를</u> ----- ----- ---. <u><삭 제></u>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나. 검토의견

□ 「기초연금법」 제25조¹⁵⁾는 기초연금의 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세부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¹⁶⁾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음.

< 국가 부담 비율 산정기준 >

(단위: %)

구분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재정 자주도	90 이상	40	50	60
	80 이상 90 미만	50	60	70
	80 미만	70	80	90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2018년 75.3% 대비 2024년 70.9%로 하락¹⁷⁾한 가운데 노인인구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바, 개정안은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

15) 「기초연금법」 제25조(비용의 분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16)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비용의 분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17)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각종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주요 사회복지사업 전반의 책임 주체 및 비용 분담 원칙 등 간의 정합성 측면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제1항제4호가목은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국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¹⁸⁾
-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50(서울특별시) 또는 100분의 70(그 외)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100분의 35(서울특별시) 또는 100분의 65(그 외)를 국가가 분담하고 있음.²⁰⁾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가.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19) 「장애인연금법」 제21조(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별로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 100분의 50

2.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100분의 70

20)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전액을 국비로 전환하게 될 경우 소요되는 재정을 고려하여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기초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으로 예산의 공동 부담이 필요하고, 유사 복지사업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제도의 평균 국고보조율도 2014년 74.5%에서 2024년 82.8%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